##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84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김위상·최은석·김소희

서명옥 · 우재준 · 김용태

김기현 • 이종배 • 김선교

임이자 · 정동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그"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	⑤		
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u>6</u>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			
록 명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